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3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3. 12.

발의자 : 임호선 · 오영환 · 김승원

김주영 · 강준현 · 정필모

이용우 · 이수진 · 노웅래

박광온 · 이원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위치정보,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CCTV 정보, 대중교통 이용내역 또는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그러나 CCTV 정보 등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, 한편, 현행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는 재난피해자 등의 수색·구조를 위하여 CCTV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, 대중교통 이용내역,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

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 신설 등).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조에서”를 “조 및 제9조의2에 서”로 한다.

법률 제17575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제9조의3 및 제9조의4로 하고,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수색·수사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)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법인·단체의 장 및 개인에 대하여 실종아동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1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

2.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

3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3호·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·직불카드·선불카드의 사용일시, 사용장소

4. 「의료법」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,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

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

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
2.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실종아동등 발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목적 달성을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

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

⑤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에 대한 파기방법,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 중 “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

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
2.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
3.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벌칙)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 중 “제9조의3제2항을”을 “제9조의4제2항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제9조의3제3항에”를 “제9조의4제3항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1. ~ 4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</p> <p>법률 제17575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법률 제17575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p>
	<p><u>제9조의2(수색·수사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)</u>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)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법인·단체의 장 및 개인에 대하여 실종아동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1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</p> <p>2.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</p>

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

3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 제3호·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·직불카드·선불카드의 사용일시, 사용장소

4. 「의료법」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,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

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.

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

2.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

	<p><u>실종아동등 발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된다는 사실</u></p> <p><u>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</u></p> <p><u>⑤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 청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에 대한 파기방법, 제3항에 따 른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</u></p>
<u>제9조의2(공개 수색·수사 체계의 구축·운영) (생략)</u>	<u>제9조의3(공개 수색·수사 체계의 구축·운영) (현행 제9조의2와 같음)</u>
<u>제9조의3(실종아동등 조기 발견 지침 등) (생략)</u>	<u>제9조의4(실종아동등 조기 발견 지침 등) (현행 제9조의3과 같 음)</u>
<u>제17조(별칙)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 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 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</u>	<u>제17조(별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u>

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2. (생 략)

-----.

1.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

2.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 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

3.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

제18조의2(별 칙)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19조(과태료) ① -----

-----.
-----.

1. 제9조의4제2항을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<u>제9조의3제3항에</u> 따른 교육·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</p> <p>③ (생 략)</p>	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제9조의4제3항에</u>----- ----- ----- 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